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88호 2021. 4. 6.(화)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20호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521호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남해군 조례 제2522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
남해군 조례 제2523호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91호	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20
남해군 규칙 제1192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3
남해군 규칙 제1193호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8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1
남해군 고시 제2021-41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32
남해군 고시 제2021-4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35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43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0
남해군 공고 제2021-435호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52
남해군 공고 제2021-473호	2020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57
남해군 공고 제2021-486호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99
남해군 공고 제2021-487호	군관리계획(교통시설창선단항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05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20호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동서비스차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노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남해군에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보장과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기요양기관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단 운영)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 위생, 차량 등의 안전관리, 노인 인권보호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안전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안전조치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안전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이동서비스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이동서비스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21호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상) 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 소설, 특별상으로 한다.

② 문학상의 시상식은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학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후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남해문화원장,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남해문화원장, 남해문인회장, 남해문학회장”으로, “군수”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연도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회에서”를 “문학상 운영에”로 한다.

2. 심사위원과 추천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문학상심사위원회) ① 시상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대상 작품의 추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22호

##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군 전역”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군수가 법 제8조”를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자가”를 “관리자는”으로, “이행한 경우에는”을 “이행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을 “주민”으로, “법 시행령 제8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를 “제1항”으로,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 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관시설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등은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흘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무색(투명) 페트병,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5종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필요시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등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리하여 군수”를 “군수”로 한다.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 전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폐기물배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신고번호)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정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군수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과태료 부과 및” 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6조” 를 “법 제16조제1항”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 를 “종량제”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판매소” 를 “제12조에 따라 판매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을 “군수는” 으로, “법 제14조” 를 “법 제14조제7항” 으로, “제작·공급·판매” 를 “제작·유통·판매”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판매소” 를 “판매소”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다만, 제1항제4호” 를 “제1항제4호” 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 를 “법 제14조제5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수료는 현금, 카드,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거리청소 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배출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는” 을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신고번호	제 호
배출일자	20 . .
배출장소	
품명 및 수량	
수수료	금 원

상기 물품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하였음.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	냉장고	900ℓ 이상	12,000	
		700ℓ 이상	10,000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김치냉장고	6,000	
2	텔레비전	24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장식대	2,000	
3	세탁기	10kg 이상	6,000	
		10kg 미만	4,000	
4	냉·난방기	세로형(폭50cm당)	5,000	
		벽면부착용	4,000	
		환풍기(팬)	3,000	
5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3,000	
6	오븐렌지	폭1m 이상	4,000	
		폭1m 미만	2,000	
7	전자·전기·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8	가스렌지 후드	모든 규격	2,000	
9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1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11	난로	모든 규격	3,000	
12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13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	
14	VTR, 타자기	모든 규격	2,000	
15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가습기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6	선풍기	일반, 벽걸이	2,000	
		스탠드 대형	3,000	
17	전기밥솥(통)	모든 규격	2,000	
18	노트북	모든 규격	2,000	
19	컴퓨터	본체	3,000	
		프린터	2,000	
		모니터	2,000	
		키보드	1,000	
20	팩스기	모든 규격	2,000	
21	전자복사기	모든 규격	3,000	
22	러닝머신	모든 규격	8,000	
23	의류관리기(스타일러)	모든 규격	5,000	
24	오디오	폭1m 이상	4,000	
		폭1m 미만	3,000	
		스피커 1개당	1,000	
		장식장	2,000	
25	기타 소형가전	모든 규격	2,000	
26	보일러	폭 1m 이상	5,000	
		폭 1m 미만	3,000	
27	전기장판(옥매트)	2인용 이상	5,000	
		1인용	3,000	
28	장롱, 옷장	폭30cm당	3,000	
29	침대	2인용(돌침대)	20,000	
		1인용(돌침대)	1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30	식탁	대리석 5인용 이상	8,000	
		대리석 4인용 이하	6,000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31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32	거실장	폭1.5m 이상	4,000	
		폭1.5m 미만	3,000	
33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34	서랍장	1단당	1,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35	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책장	폭1.5m 이상	6,000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36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책꽂이	2,000	
37	캐비닛	높이1.8m 이상	5,000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38	싱크대	찬장 1쪽당	4,000	
		1쪽당	3,000	
39	소파	4인용 이상	6,000	
		3인용	4,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40	의자	안마용	5,000	
		학생용	1,000	
		업소(사무)용	2,000	
41	피아노	어프라이트	15,000	
		그랜드	20,000	
		오르간	4,000	
42	쌀통	모든규격	2,000	
43	유리종목(거울, 액자)	m <sup>2</sup> 당	1,000	
44	병풍	모든 규격	3,000	
45	문짝	0.9m×1.8m당	3,000	
46	자전거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47	유모차,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48	보행기	모든 규격	1,000	
49	물통(저수조)	5톤 이상	15,000	
		5톤 미만	10,000	
50	간판	입간판	2,000	
		0.6m×1.8m 미만	4,000	
		0.6m×1.8m 이상	7,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51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52	어항, 수족관	1m 이상	5,000	
		1m 미만	2,000	
53	변기	모든 규격	3,000	
54	욕조	모든 규격	5,000	
55	실버카	모든 규격	2,000	
56	카펫, 장판, 대자리	3.3㎡당	2,000	
57	타이어	소형	3,000	
58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59	칸막이 패널	1㎡ 이상	3,000	
		1㎡ 미만	2,000	
60	시계	입식용	2,000	
		벽걸이용	1,000	
61	이불	솜이불	3,000	
		홀이불(담요)	2,000	
62	쿠션, 베개	모든 규격	1,000	
63	의류 건조대	모든 규격	2,000	
64	옷걸이	스탠드형	2,000	
		벽걸이용	1,000	
65	블라인드	모든 규격	2,000	
66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67	창문틀	1m×1m당	2,000	
68	가방	일반가방	1,000	
		여행용	2,000	
		대형(골프, 낚시)	3,000	
69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1,000	
70	화분	모든 규격	1,000	
71	반려동물 구조물	개집	3,000	
		캣타워	3,000	
72	암롤박스(롤온박스)	4.5㎡ 1대당	60,000	
73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74	폐소화기	3.4kg 이상	3,000	
		3.4kg 미만	2,000	
75	마대(잡쓰레기 등)	10kg 당	2,000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에 준함.



[별표 3]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방법(제2조 및 제8조 관련)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방 법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li> </ul>
바. 합성수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li> <li>- 비닐(필름)류는 훑날리지 않도록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li> <li>※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것만 재활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티로폼 완충재</li> <li>-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li> <li>-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li> <li>-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li> </ul>
사. 영농폐기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라 넣어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폐비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li> </ul>
아.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섬유류</li> <li>○ 기타 의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li> <li>- 이불, 담요, 솜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li> </ul>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방 법
자.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광등</li> <li>-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냉장형(CF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광등 분리수거용기나 봉투에 넣어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마대에 배출</li> </ul>
차.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리튬1차 전지, 망간 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li> <li>-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li> <li>-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li> </ul>
카. 소형 가전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믹서(녹즙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게임기, 안마기, 다리미, 토스터기, 계산기, 시계, 전화기, 모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주요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li> </ul>
타. 폐식용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식용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li> </ul>

※ 비 고

1.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2.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배출일·시간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남해군 조례 제2523호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91호

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른” 을 “따라”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군의회” 를 “군수가 남해군의회의(이하 “군의회”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하는” 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 위원은 국장, 담당관, 추진단장,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제3조제2항(중전의 제1항) 단서 중 “경험” 을 “관하여 경험” 으로, “사람” 을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제4조의 제목 (“의장의 의무”) 를 (“의장의 직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산담당” 을 “예산관련 담당 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석하게” 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③ 안건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관실과”를 “소관 부서”로 “담당 이”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

① 의안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실과단소”를 “부서”로, “관계실과간”을 “관계부서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간”을 “부서 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실과”를 “그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언”을 “대하여 발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서의 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소, 직속기관의 6급이상”을 “부서의 6급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관부서별”을 “소관 부서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본문 중 추진단장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청사신축추진단의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남해군 규칙 제1192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규칙] 남해군 규칙 제1096호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용토지)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세부 명칭과 사용하는 토  
지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사시설사용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대비용 등) 조례 별표2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 부대비용: 작업비 및 비석, 상석 등 재료비
  2. 봉안당, 담식봉안시설 및 봉안묘 부대비용 : 위패 각인비, 봉안묘 설치비 등
  3. 봉안평장 부대비용: 작업비, 와비 및 각인비 등 재료비
  4. 자연장 부대비용: 고인표지 및 각인비, 작업비 등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중 무의탁사망자
2.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사망자
3. 장사시설이 있는 서면 연축리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둔 사망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액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급자 증명서
- 2. 국가유공자 증명서
- 3. 참전용사자 증명서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14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매장묘역 : 묘역 계단 안쪽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매장
- 2. 봉안당 : 각 안치단의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
- 3. 봉안평장 : 계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안치
- 4. 자연장지 : 묘역별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

②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면서 그 왼쪽이나 오른쪽을 그 배우자의 장사시설로 사용하고자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연고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할 때에 납부한다.

④ 연고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가묘를 설치할 수 없다.

⑤ 자연장지를 가족 또는 문중 단위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가족 또는 문중별 48기 이내에서 사전에 분양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변경신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8조(유골 반환 신청)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분묘의 시설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의 시설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매장묘역에 부부를 나란히 안장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중간지점에 묘비 및 상석을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③ 봉안평장으로 안치하는 유골함은 단일 형태로서 부식되는 재질을 사용하고 그 두께가 1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시설기준은 별표3과 같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193호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 를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상종류)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시조): 대상, 신인상
2. 소설: 대상, 신인상
3. 특별상: 유배문학 특별상(유배문학과 남해군 문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제3조(수상후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 이라 한다) 수상 후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시(시조) 및 소설: 최근 2년 이내 창작된 작품 중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품
2. 특별상: 문학 관련 단체, 문학가, 개인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의 제목 “(문학상심사위원회 등)” 을 “(문학상심사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6항” 을 “제11조” 로, “심사위원장” 을 “위원장” 으로, “구성한다” 를 “구성하고,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 를 “한다)의” 로, “심사위원은” 을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으로, “심사위원장이” 를 “군수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과 추천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문학상 장르별” 을 “문학상의 부문별” 로 한다.

③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제3호 중 “선정” 을 “추천 및 선정”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 1명과 장르별 우수상 2명, 특별상 2명 이내” 를 “부문별 대상과 신인상 각 1명”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배문학 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상” 을 “남해군이 출간한 수상” 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대사천(지방하천)
2. 성 명 : 국토지리정보원(국토측량과)
3.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4. 점용목적 : 국가기준점(U남해35)의 이전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989-1번지
6. 점용면적 : 1㎡
7. 점용기간 : 2021. 3. 24. ~ 영구점용(설치 기간: 2021. 3. 24 ~ 3. 31.)



남해군 고시 제2021-41호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23.

##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02,919,054	505,466,568	△2,547,514	
일 반 회 계	429,138,708	425,516,222	3,622,486	
특 별 회 계	73,780,346	79,950,346	△6,170,000	
상수도특별회계	23,017,503	23,017,503	-	
청사건립특별회계	6,478,100	12,478,100	△6,00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4,315	724,315	-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25,261	825,26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55,544	555,544	-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42,179,623	42,349,623	△170,000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29,138,708	425,516,222	3,622,486	
지방세 수입	19,501,606	19,501,606	-	
지방세	19,501,606	19,501,606	-	
세 외 수 입	10,582,023	10,582,023	-	
경상적세외수입	5,098,401	5,098,401	-	
임시적세외수입	5,031,582	5,031,582	-	
지방행정체제·부과금	452,040	452,040	-	
지방교부세	169,160,000	168,665,000	495,000	
조정교부금등	18,716,371	18,716,371	-	
보조금	170,591,627	167,464,141	3,127,486	
국고보조금등	130,241,745	127,759,237	2,482,508	
도비보조금등	40,349,882	39,704,904	644,97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587,081	40,587,081	-	
보전수입등	40,450,569	40,450,569	-	
내부거래	136,512	136,512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73,780,346	79,950,346	△6,170,000	
지방세			-	
세외수입	4,456,308	4,456,308	-	
경상적세외수입	4,214,950	4,214,950	-	
임시적세외수입	82,358	82,358	-	
지방행정체제·부과금	159,000	159,000	-	
지방교부세			-	
보조금	28,151,813	28,151,813	-	
국고보조금등	20,436,702	20,436,702	-	
도비보조금등	7,715,111	7,715,111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172,225	47,342,225	△6,170,000	
보전수입등	2,130,825	2,130,825	-	
내부거래	39,041,400	45,211,400	△6,170,000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429,138,708	425,516,222	3,622,486	
인 건 비	60,782,255	60,782,255	-	
물 건 비	28,465,231	28,568,611	△103,380	
경 상 이 전	161,130,822	156,662,112	4,468,710	
자 본 지 출	137,158,968	133,055,208	4,103,760	
용 자 및 출 자	23,000	23,000	-	
보 전 재 원			-	
내 부 거 래	35,006,300	41,176,300	△6,170,000	
예 비 비 및 기 타	6,572,132	5,248,736	1,323,396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73,780,346	79,950,346	△6,170,000	
인 건 비	2,778,560	2,778,560	-	
물 건 비	5,620,495	5,620,495	-	
경 상 이 전	9,927,487	10,097,487	△170,000	
자 본 지 출	53,662,185	53,662,185	-	
용 자 및 출 자			-	
보 전 재 원			-	
내 부 거 래	1,625,261	7,625,261	△6,000,000	
예 비 비 및 기 타	166,358	166,358	-	

남해군 고시 제2021 - 42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 남 해 군 수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세부현황

지 구 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 사유
		유 형	등 급	면 적 (m <sup>2</sup> )	
대곡	고현면 대곡리 857-2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53,289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상가	남면 상가리 1185-2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69,105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동천	삼동면 동천리 산 362-5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108,953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경상남도 남해군(재난안전과)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2021. 3. 23.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 구 명	사업시기	사 업 내 용	비고
대곡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53,289m <sup>2</sup>	
상가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69,105m <sup>2</sup>	
동천	2022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108,953m <sup>2</sup>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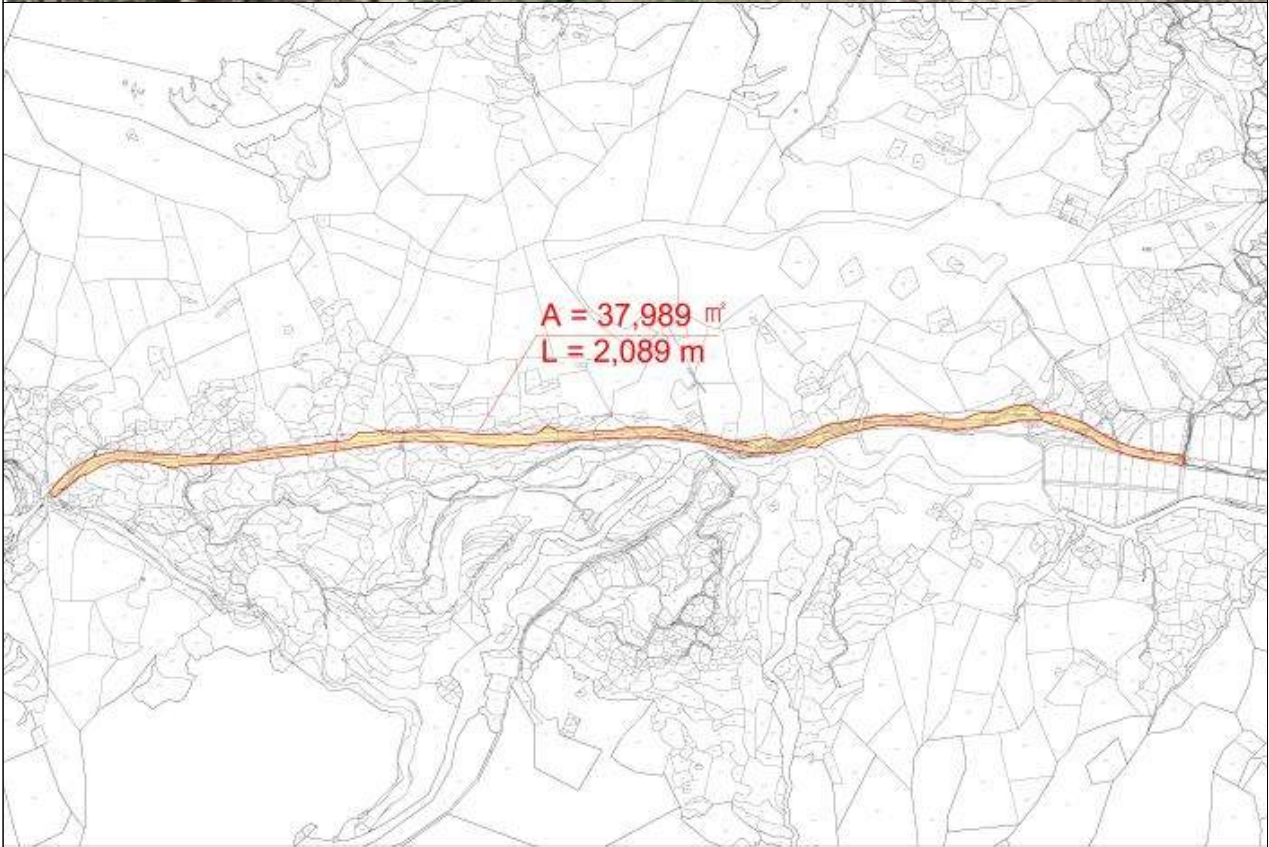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 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함.

7. 문의처: 경상남도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3)

- 붙임 1. 위치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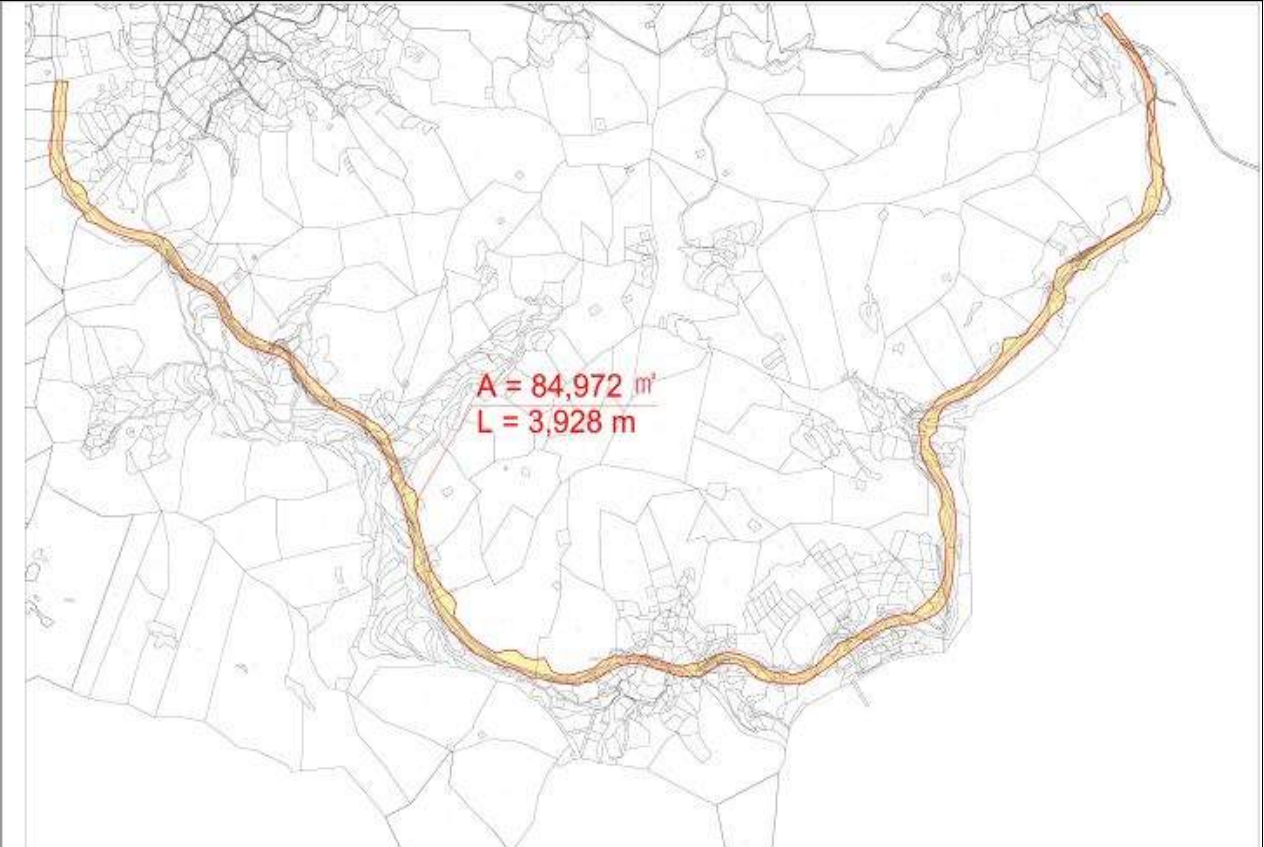
◆ 대곡지구(고현면 대곡리 857-2 일원)



◆ 상가지구(남면 상가리 1185-2 일원)



◆ 동천지구(삼동면 동천리 산 362-5 일원)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43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2.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으로 2022.1.1.이후부터 총 5점 범위 내 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자치단체 규칙에 위임하여 인사규칙에 반영
  - 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을 정비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방법 개선내용 중 오류 사항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사항 보완 및 개선
- 3. 주요내용
  -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안 제6조의2, 별지 제3호서식)
    - 보호대상자 → 지원대상자

-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 ▶ 방재기사 자격증이 신설되어 방재기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4개 직류(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방재안전)에 방재기사 자격증 규정
    - ▶ 생물공학 기사 명칭 변경 반영(생물공학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명칭 변경 반영(기계가공조립 → 기계조립)
  - 방재안전직렬 경력경쟁임용·가산대상 자격요건 개정(별표 5의2, 별표 7의4)
    - ▶ 방재안전직렬에 토목, 건축 등 실제 업무 유관분야 자격증을 신설
  - 방재안전연구직렬 경력경쟁임용·가산대상 자격요건 신설 등(별표 2, 별표 6, 별표 7의4, 별표 11)
    - ▶ 방재안전연구직렬 전공분야, 자격증 신설
    - ▶ 잠업곤충 직류 명칭 변경 반영(잠업곤충 → 산업곤충)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방법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 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의2, 별표 15, 별표 16의2, 별표 17)
  - 자격증 등 가산점 부여 내용 정비
  -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부여 규정 신설
  - 실적 가산점 부여 규정 신설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미정비 사항 반영 및 삭제
  - 반영(안 제3조제2항제8호, 제6조제2항 단서, 제12조제4항, 제24조의2, 제25조의2제2항, 제3항)
  - 삭제(안 제 13조의2제2항 단서, 13조의3제1항, 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6항, 제18조제3항, 제27조의2)
- 법령개정에 따른 별표 삭제(별표 4의2, 별표 7의2, 별표 16)
- 기타 미비사항 보완·개선
  - 오류사항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오탈자 수정, 띄어쓰기 등

4. 개정 조례 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425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행정과(전화 : 055-860-3113, FAX : 055-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인사담당(전화 : 055-860-3113)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임용시험·승진”을 “임용·시험·승진”으로, “규칙”을 “규칙이 정하는 바”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명”을 “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제21조의2”를 “영제21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제27조의4제4항”을 “영 제27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영제33조의2제1항”을 “영 제3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제38조의4제1항제4호”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영제21조의4제2항”을 “영 제21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 시험의 세부 일정

제3조의2의 제목 “(인사위원회의 심의수당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시험”을 삽입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매를 제출”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시험실시기관”을 “시험실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의 제목 “(응시 수수료)”를 “(응시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를 “영 제64조의 규정”으로, “시험요구서류”를 “시험요구 서류”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9조”를 “영 제59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 앞에 “제2장 시험”을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하려”를 “응시하고자 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를 “기타”로, “제8조”를 “인하여 제8조의 규정”으로, “부적당 하다고”를 “부적당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를 “기타”로,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으로, “연령·학력 또는”을 “연령·학력,”으로, “정하는”을 “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은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를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출장오”를 “출장 오”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1 및 12호”를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여부등”을 “여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13조의3제2항 본문의 후단 중 “둘” 을 “2개” 로, “경우에는” 을 “때에는” 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을 “영 제17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으로, “이조에” 를 “이 조에서” 로, “응  
시자격 요건을 [별표 5]” 를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 를 “제6조의 규정” 으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임용예정직  
급별” 을 “임용예정 직급별” 로, “자로” 를 “사람으로” 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제6조” 를 “제6조의 규정” 으로,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  
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 을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  
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 로, “별표 8 의” 를 “별표 8의” 로,  
“임용예정 계급” 을 “임용예정계급”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정직 공무  
원” 을 “별정직공무원” 으로,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 를 “근  
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 로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연구및지도의규정 제6조” 를 “및 연구및지  
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 으로, “경력경쟁임용 하려” 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 로, “임용예정직급” 을 “임용예정 직급”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  
력경쟁임용대상자” 를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을  
“학교장이 추천한” 으로 하며, 같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  
항 전단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으로, “자이어야 하며, 영 17조제1항제8호” 를 “사람  
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로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제14조제7항 중 “제6조” 를 “제6조의 규정” 으로, “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 를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제1항부  
터 제4항까지” 를 “제1항 내지 제4항”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임용예정직  
급관련” 을 “임용예정 직급 관련” 으로, “대해서도” 를 “대하여도” 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별표 5의3과” 를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 제1호” 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요건)” 을 “(특수 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을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로, “자는 동표에 규정된” 을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 을 “제1항의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 “” 를 “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는 “자격증 소지여부” ”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특수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을 “(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 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환경 : · 지방공무원수당” 을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으로, “규정” 을 “규정” 으로,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을 “장려수당 지급대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지역 : · 지방공무원수당” 을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으로, “규정” 제12조에 따른” 을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을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로,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 을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 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을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9조제4호” 를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 을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9조제5호” 를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제18조제1항 중 “사람이 영 제11조” 를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 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 를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으로, “임용결격사유” 를 “임용 결격사유”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용예정 직위” 를 “임용예정직위” 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 으로, “이내” 를 “내” 로, “별지 제6호서식” 을 “별지 제6호 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임용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 을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으로,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를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로,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을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으로,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를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을 “제1항의 규정” 으로, “따라” 를 “의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을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33조제8항” 을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 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5조의 제목 “(특별승진 임용기준)” 을 “(특별승진임용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을 “연구및지도직규정” 으로, “각 호와 같다” 를 “각호와 같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규제개혁” 을 “규제 개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를 “국정과제”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의 제목 “(자격증 가점)” 을 “(자격증가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다.

③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8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6조 중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를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를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으로, “도서·벽지등”을 “도서·벽지 등”으로, “사람에게”를 “사람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를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격무·기피 업무”를 “격무·기피업무”로,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에 대해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원창구”를 “민원창구에”로, “해당 업무에”를 “당해업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를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로, “제34조의”를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당연 퇴직하는”을 “당연퇴직하는”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7의4,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별표 7의2,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표 5의4, 별표 17,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호서식, 별지 4호서식, 별지 11호서식, 별지 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 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435호

##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방문의 해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4월 1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의 해 지정) 남해군은 2022년을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방문의 해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절, 질서, 청결운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2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방문의 해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4. 방문의 해 홍보활동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5. 방문의 해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활성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녹지과장, 보건소장, 유통지원과장이 되며, 군수는 필요하면 각 부서별 업무 담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남해군의회 의원
  - 2.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 3. 관광관련 사업자 및 문화예술·관광·환경 단체 회원
  - 4.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5. 그 밖에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방문의 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전문분야별로 분담·심사하고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섯 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 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위원장 공동명의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473호

## 2020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남 해 군 수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0년도에는 자연재난(풍수해)이 4회 발생하여 피해는 101건 2,511 백만원이며, 복구는 101건 3,070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재난(전염병)이 2회 발생(해외입국 1명, 국내접촉 1명)하여 2명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 자연재난(풍수해)은 4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2,511백만원이며 복구는 3,07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해복구는 진행 중입니다.
  - 재난발생현황은 자연재난(풍수해)이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고, 자연재난(풍수해)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남해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난 안전과에서 재난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남해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건설국을 신설 및 기존의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안전기획팀에서는 사회재난, 방재복구팀에서는 자연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에는 방재안전직이 기존 1명에서 1명이 총원되어 총 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문적인 재난 대응의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군은 전 읍면 및 마을회관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7개소, 자동우량 관측장비 및 강우량계가 전읍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또한, 재난영상감지시스템(CCTV) 및 재해문자전광판 8개소 및 민방위 경보시설, 위성전화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152백만원이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2,105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 그 밖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61개 시설 중 19개 시설이 내진 성능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31%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관리 기금확보 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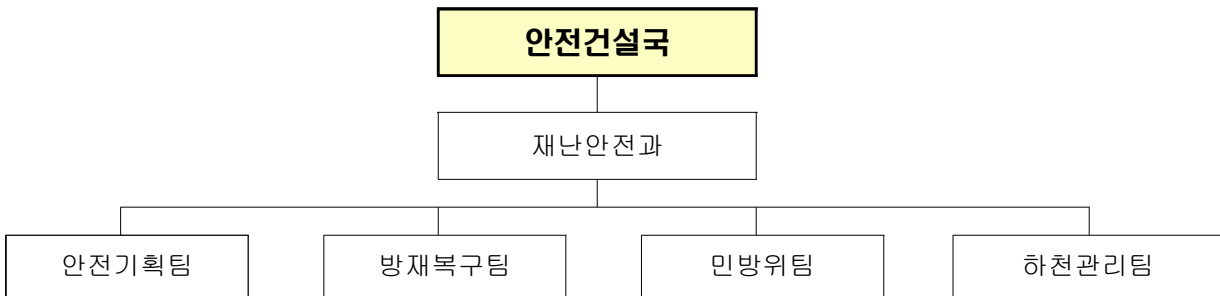
###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10. 27.	마이삭	-공공시설 101개소	-공공시설 101개소	복구 진행 중
11. 20.	하이선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재난안전과)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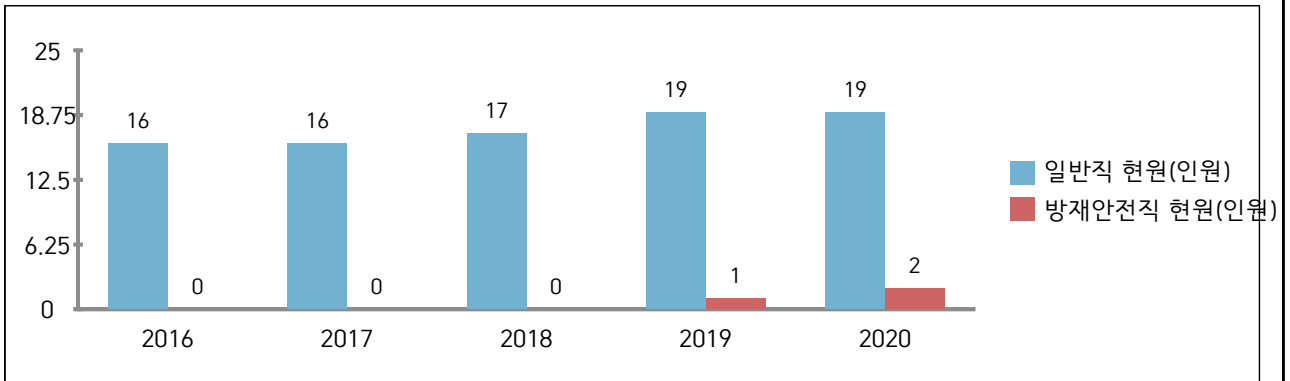
과 별	계	일 반 직								전문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재난 안전과	정원	21	21	1	1	4	6	7	2	-	-
	현원	19	19	1	1	4	4	4	5	-	-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재난 안전과	정원	2	2					1	1
	현원	2	2	-	-	-	-	1	1

◆ 연도별 비교(재난안전과)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16	16	17	19	19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	-	-	1	2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방재안전직 신규채용(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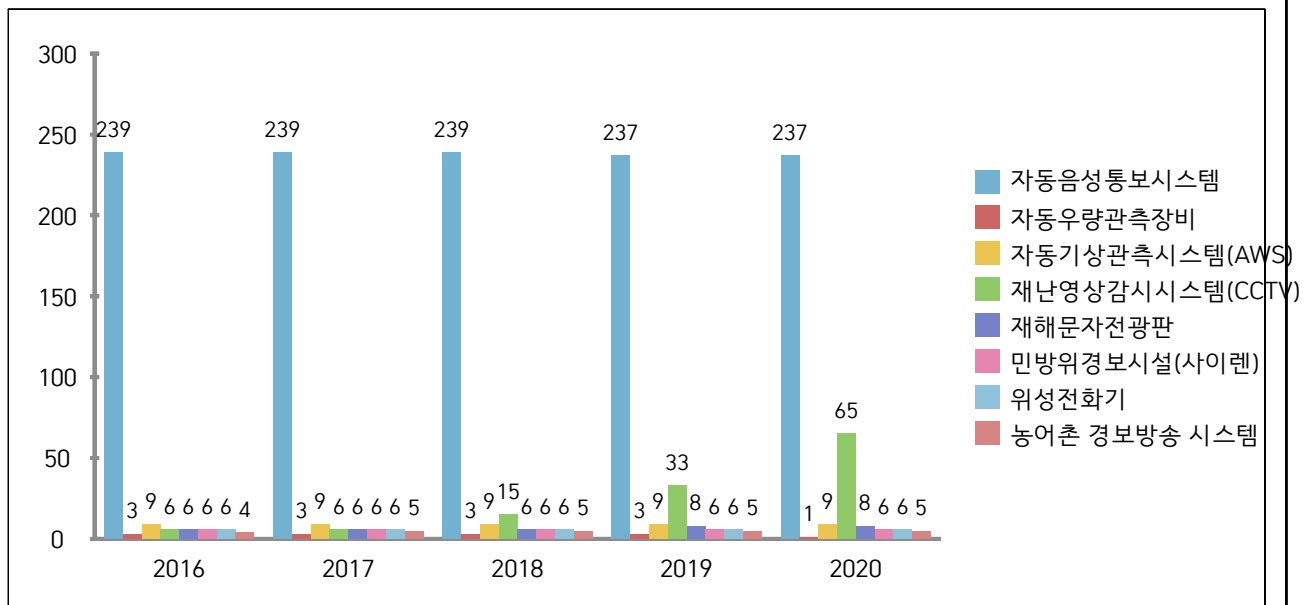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7	전 읍.면
자동우량관측장비	1	상주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전 읍.면(상주면 기상청 관리)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5	전 읍.면
재해문자전광판	8	남해, 상주, 송정, 사촌, 두곡 설리, 삼동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남해, 상주, 삼동, 미조, 남, 창선
위성전화기	6	재난안전상황실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5	이동, 서면, 창선, 고현, 설천
기타	1	위성DMB(조도)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9	239	239	237	237
자동우량관측장비	3	3	3	3	1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9	9	9	9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	6	15	33	65
재해문자전광판	6	6	6	8	8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6	6	6	6
위성전화기	6	6	6	6	6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4	5	5	5	5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강우량계 2개소 미사용
- 재난영상 CCTV 신규설치로 증가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민방위대 교육운영과정	2020.01.16.~ 2020.02.15.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회재난복구제도의 이해	2020.01.16.~ 2020.02.15.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2020년 안전한국훈련 관계기관 회의	2020.01.17.	행정안전부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설명회」	2020.01.21.	행정안전부	1	
민방위대편성 운영과정	2020.02.01.~ 2020.02.29.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2020년 풍수해보험 읍면 담당자 직무교육	2020.02.14.	남해군청	20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교육	2020.05.13.	행정안전부	1	
2020년 풍수해관리시스템 지자체 사용자 교육	2020.05.22.	행정안전부	5	
2020년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 담당자 교육	2020.06.04.	행정안전부	2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교육	2020.06.30.	행정안전부	2	
2020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설명회	2020.07.02.	경상남도	9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전교육	2020.07.23.	행정안전부	1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및 평가계획 교육과정	2020.08.10.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교육	2020.09.11.	행정안전부	1	

# 남 해 군 공 보

2021년 4월 6일

제 688 호 (63)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NDMS 자가격리 일일상황보고 시스템 교육	2020.10.05.	행정안전부	1	
2020년 지역안전도 진단 설명회 및 모의훈련	2020.10.12.~ 2020.10.13.	행정안전부	1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지침 설명회	2020.11.02.	행정안전부	1	
경상남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토론회	2020.11.06.	경상남도	4	
생활안전과정	2020.12.01.~ 2020.12.15.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안전한국훈련 완전정복 교육과정	2020.12.01.~ 2020.12.15.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찾아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2020.12.16.	국토교통부	2	

##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임무교육	03.25	상황실	33	상반기 총회	남해군청	
안전교육	05.16	창원	3	직무능력 교육	경남도청	
임무교육	10.05	상황실	31	하반기 총회	남해군청	

## [주부민방위 기동대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직무교육	2020.01.29.	상황실	15	겨울철 안전운전법, 안전신문고 교육	남해군청	상반기 간담회
직무교육	2020.07.30.	상황실	10	호우 안전수칙, 응급처치교육	남해군청	하반기 간담회



[마을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마을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교육	2020.06.26.	노인 복지관	230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 등	남해군	
마을안전지킴이 간담회	2020.07.09.	상황실	16	노인안전관리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남해군	

[(해상)안전보안관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해상안전보안관 발대식	2020.06.12	경남도청	56	해상안전사고 신고요령 등 교육	경상남 도	
(해상)안전보안관 직무교육	2020.07.17	노인 복지관	34	안전정책 홍보 및 기타교육	남해군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해 당 없 음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남해군청 직원 자살예방 교육	2020.02.04.	군청 대회의실	100	우울증 및 정신질환, 자살신호 및 개입기술 안내 등	남해군	
2020년 「자살예방 및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2020.02.~12.	남해군청 및 관내 학교	1,300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교육 등	남해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보안교육	2020.02.19.	전 부서	541	개인정보 유출시 조치요령, 재난재해 발생 대비 위기대응 절차 교육 등	남해군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관 운영	2020년 학기중	관내 학교	1,722	흡연예방 교육 및 체험형 흡연예방 프로그램 시행	남해군	
2020년 남해군 위기청소년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2020.06.~12.	관내 학교	1,216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위험성 인식, 관련사례 및 경험을 통한 대처방법 및 해결방법 제시	남해군	
2020년 생활터전학교 안전교육	2020.06.04.	전산교육 장	35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 등	남해 소방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안전교육	2020.06.11.	노인복지관	165	심폐소생술 및 생활응급처치교육	남해 소방서	
2020년 상반기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2020.06.18.	남해군 노인복지 관	493	4대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직장 및 가정에서의 방지대책 교육	남해군	
보물섬복지센터 소방안전교육	2020.06.29.	남해 소방서	75	화재 시 초기대처 및 피난요령 등	남해 소방서	
2020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2020. 7월 중	노인복지 관	1,753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교육	남해군	
식중독 사각지대 대상 찾아가는 위생교육	2020.07.23.	설천면 노량마을 회관	20	식중독 예방실천, 안전한 음식문화개선. 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지침	남해군	
폭염대비 온열질환 및 감염병 예방교육	2020.07.14. ~2020.07.30.	마을회관, 지역아동 센터	1,850	폭염대비 온열질환 및 감염병 예방교육	남해군	
건설기계종사자 안전교육	2020.08.~10.	이동면 복지회관	486	일반건설기계조종 사 안전교육 등	남해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2020.08.03.	마을회관	30	기침예절 및 코로나19 예방, 쯔쯔가무시증 등	남해군	

# 남 해 군 공 보

(66) 제 688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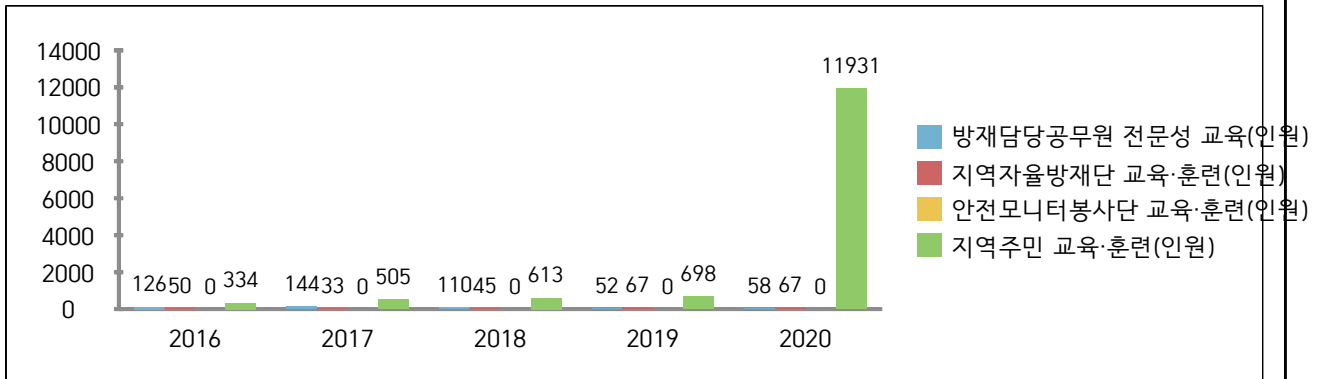
2021년 4월 6일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생활안전 경연게임 및 소방안전교육	2020.08.13.	남해지역 자활센터	50	생활안전 경연게임 등	남해 소방서	
2020년 소비자 직품위생 감시원 직무교육	2020.08.18.	보건소	16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식중독의 이해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요령 등	남해군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캠페인	2020.08.18.	상주 은모래비 치	80	물놀이 안전 캠페인 등	남해군	
2020년 한국 119 소년단 발대식 및 소방안전교육	2020.9.~10.	고현초 외 3곳	75	소방안전 교육 등	남해 소방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안전교육 위기탈출 준영	2020.10.20. ~2020.12.24.	청소년심 터다문화 가정	51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교육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2020년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교육	2020.10.19. ~2020.10.20.	농촌생활 문화관	20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농약 등 약물관련 주의사항, 농작업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남해군	
2020년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2020.10.24. ~2020.10.30.	온라인, 민간위탁 교육	578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등	남해군	
상주면 종합복지회관 소방훈련 및 교육	2020.10.27.	상주면 종합 복지회관	69	공공기관 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남해군	
교통안전(자전거 안전) 교육	2020.10월 중	창선 초등학교	50	안전한 자전거타기 등	창선초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위기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2020.11.02./ 11.04/11.06.	관내 초중고	266	게임 속 사행성과 도박이해하기, 청소년 도박 4단계 및 자가진단 등	남해군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 119안전체험 한마당	2020.11.16.	남해 소방서	199	심폐소생술 체험 및 미래소방관 체험 등	남해 소방서	
2020년 학교로 찾아가는 119 안전체험교육	2020.11.16.	창선초	111	심폐소생술 체험 및 미래소방관 체험 등	남해 소방서	
2020년 산불감시원 교육	2020.11.16.~ 2020.11.21.	읍면행정 복지센터	80	안전 및 복구관리교육, 직무교육	남해군	
음주폐해의 달 기념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2020.11.17.	도립남해 대학	300	음주폐해예방, 심뇌혈관예방 관리 등	남해군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126	144	110	52	58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50	33	45	67	67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인원)	0	0	0	0	0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334	505	613	698	11,931



☞ 구체적 내용설명(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한국훈련의 취소 및 집합 모임의 최소화
- 관내 시설 및 초중고교 교육 확대로 지역주민 교육 증가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해 당 없 음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보물섬 사관학교	보물섬 사관학교 안전점검	2020.01.28.	예비군	4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남해군 소재 경로당 안전점검	2020.01.	관내경로당	-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남해군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 안전점검	2020.02.17.	관내 청소년시설	5	
해빙기 안전점검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2020.04.	관내전역	10	
물놀이 안전 현장점검	물놀이 지역 현장점검	2020.08.14.	남해읍, 삼동면	4	캠페인 병행
추석연휴 안전점검	추석연휴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2020.09.18.	공용터미널, 남해시장	5	캠페인 병행
물놀이 현장 점검	물놀이 혁신시제품 현장점검	2020.10.30.	남해읍, 삼동면	8	
가을행락철 안전점검	가을 산행철 안전점검	2020.10.30.	남해군 금산 일대	50	캠페인 병행
주부민방위 기동대 캠페인	군민안전보험 홍보 캠페인	2020.11.02.	남해읍 시가지	18	캠페인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	남해군, “스몸비(smombie) 교통사고 막는다!”	군정홍보	1. 21.	창원일보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경남매일 전국매일신문 경남연합일보	
2	남해군, 설 명절 종합대책 마련	군정홍보	1. 22.	경남연합일보	
3	남해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과속방지턱 등 정비	군정홍보	1. 28.	경남연합일보 경남신문 뉴스경남 전국매일 경남일보	
4	남해군보건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촉각’	군정홍보	1. 29.	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5	남해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 및 확산방지 총력 대응	군정홍보	2. 4.	경남매일 도민일보 뉴스경남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6	남해군, 안전한 남해 구현 위해 재난 차단 적극 나서	군정홍보	2. 4.	경남연합일보	
7	남해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점검	군정홍보	2. 5.	경남도민신문	
8	남해군 치매안심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나서	군정홍보	2. 6.	경남연합일보	
9	남해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총력	군정홍보	2. 6.	도민일보	
10	남해군, 가스난방사용 농어촌민박 안전 전수점검 실시	안전점검	2. 7.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11	남해군,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추진	군정홍보	2. 11.	경남도민신문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뉴스경남 경남일보	
12	남해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에 총력	군정홍보	2. 12.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 남 해 군 공 보

(70) 제 688 호

2021년 4월 6일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3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강화	군정홍보	2. 12.	뉴스경남	
14	남해군, '신종 코로나' 예방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집중 전개	군정홍보	2. 13.	경남연합일보	
15	남해군, 각종 집단행사 시 코로나19 대응방침 마련	군정홍보	2. 19.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16	남해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군정홍보	2. 21.	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17	남해군, 보안·가로등 고효율 LED등 교체 “야간 환경개선”	군정홍보	2. 24.	경남신문 경남연합일보	
18	남해군, 코로나19 지역차단 위해 전방위적 대응 돌입	군정홍보	2. 26.	경남신문 경남매일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19	장충남 남해군수 코로나19 “직접 챙겨나가겠다”	군정홍보	2. 27.	경남매일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20	남해공용여객터미널, 무균소독실 2대 설치	군정홍보	3. 2.	경남연합일보	
21	남해군, 코로나19 종교시설 전파 예방‘안간힘’	군정홍보	3. 2.	창원일보 뉴스경남 경남매일	
22	남해군보건소, 코로나19 폐렴증상 진단 이동형 방사선(X-ray)장비 보강 운영	군정홍보	3. 2.	경남연합일보	
23	코로나19 관련 남해군 브리핑	군정홍보	3. 3.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24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군정홍보	3. 5.	경남연합일보 경남일보 뉴스경남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매일	
25	남해군, 남해공용여객터미널 등 방역차량 투입	군정홍보	3. 5.	뉴스경남 창원일보	
26	남해군, 코로나19 예방 위해 ‘드론’ 방역 실시	군정홍보	3. 10.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경남일보	
27	남해군 사회단체, 면마스크 착용 릴레이 캠페인 나서…	캠페인 전개	3. 11.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 남 해 군 공 보

2021년 4월 6일

제 688 호 (71)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28	남해군, 봄철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안전홍보	3. 12.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29	남해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 지원사업 추진	군정홍보	3. 19.	경남연합일보 도민일보 경남매일	
30	남해군외식업지부, 코로나19 방역작업 나서...	군정홍보	3. 19.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31	남해군 사회단체, 면마스크 사용 릴레이 캠페인 마무리	캠페인 전개	3. 23.	경남매일	
32	남해군, 매주 금요일 '군민 일제 방역의 날' 운영	군정홍보	3. 24.	경남연합일보 도민일보 뉴스경남	
33	남해군, 내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군정홍보	3. 25.	뉴스경남	
34	남해군, 야외관광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추진	캠페인 전개	3. 27.	경남매일 뉴스경남	
35	남해군, 코로나19로 4·5월 지역 축제 취소 및 연기	군정홍보	3. 27.	경남신문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경남일보	
36	남해군, '군민 일제 방역의 날' 민·관·군 합동 방역	군정홍보	3. 30.	경남매일	
37	'남해군, '군민 일제 방역의 날' 합동 방역	군정홍보	4. 13.	경남연합일보	
38	남해군,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코로나19 모니터링	군정홍보	4. 17.	경남매일 한남일보 뉴스경남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39	남해군, "하절기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서둘러 가입하세요"	안전홍보	4. 27.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40	코로나19 선제적인 조직 개편, 체계적 군정추진 "빛났다"	군정홍보	5. 11.	경남매일 경남일보 뉴스경남 한남일보 전국매일신문 경남연합일보 도민일보	
41	남해군,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본격 추진	군정홍보	5. 22.	경남도민신문 도민일보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42	남해군,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추진	군정홍보	5. 26.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경남일보	
43	남해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번개탄 판매 환경 점검 실시	안전점검	6. 15.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44	남해군보건소,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관리 교육 실시	교육실시	6. 16.	경남연합일보 도민일보 뉴스경남	
45	남해군, 상수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전점검	6. 18.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46	남해군, 생활 속 거리두기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캠페인 전개	6. 24.	경남도민일보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47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발대식 개최	군정홍보	6. 29.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도민일보 경남연합일보 한남일보	
48	장충남 남해군수, 재해위험지 및 사업장 현장점검	안전점검	7. 6.	뉴스경남 한남일보 전국매일신문 경남연합일보 도민일보	
49	남해군,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대응 보건소 선별진료소 시설확충 및 현대화	군정홍보	7. 7.	경남매일 도민일보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50	남해군, 폭염대비 무더위관리센터 시설정비	안전점검	7. 13.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51	남해군,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회의 개최	군정홍보	8. 12.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도민일보	
52	남해군, 코로나19 유입 차단... 본관 출입문 일원화	군정홍보	8. 24.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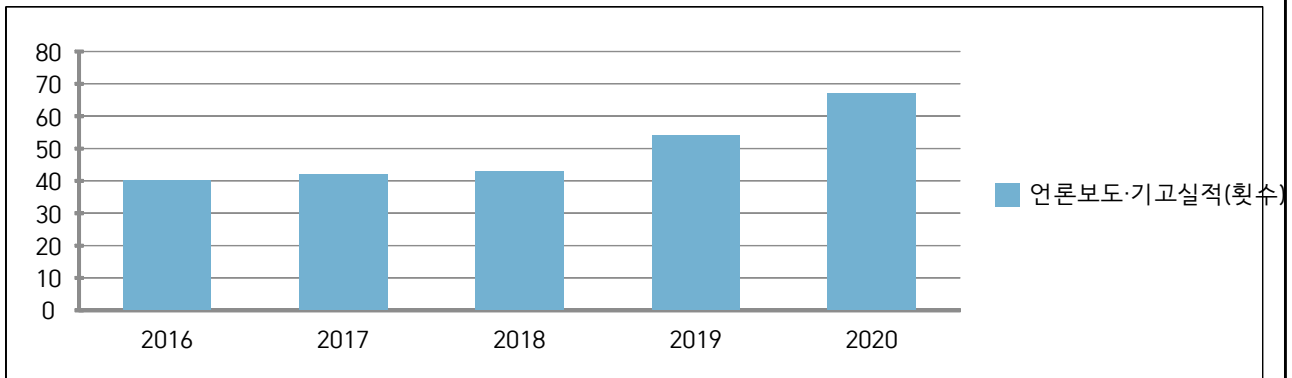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53	제8호 태풍 ‘바비’ 복상, “농작물 피해 예방 철저해야...”	안전홍보	8. 27.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54	장충남 남해군수, 태풍 ‘바비’ 대비 긴급 점검	안전점검	8. 27.	연합뉴스	
55	남해군, 태풍 ‘마이삭’ 복상에 따른 대비체계 구축	안전점검	9. 3.	도민일보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56	남해군,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점검	안전점검	9. 3.	창원일보	
57	남해 전통식 파도막이, 태풍 피해 예방 효과 톡톡	군정홍보	9. 9.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도민일보 창원일보	
58	코로나19 예방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하세요”	안전홍보	9. 10.	경남연합일보	
59	장충남 남해군수 “추석이 코로나 방역 중대 고비”	안전홍보	9. 18.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60	농기계로 인한 각종 사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으로 지키세요!	안전홍보	10 21.	경남연합일보	
61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실시	캠페인 전개	11. 3.	경남연합일보	
62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군정홍보	11. 11.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경남연합일보	
63	남해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임시휴장 조치	군정홍보	11. 26.	뉴스경남 도민일보 경남연합일보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64	남해군,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위해 사회복지시설 임시휴관	군정홍보	11. 30.	한남일보 창원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65	남해군, 고령자 위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군정홍보	12. 1.	경남연합일보	
66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브리핑	군정홍보	12. 22.	뉴스경남 경남매일 창원일보 도민일보 전국매일신문 경남연합일보	
67	남해군 코로나19 방역 합동점검 추진단 운영	군정홍보	12. 23.	경남연합일보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40	42	43	54	67



☞ 구체적 내용설명(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과의 증감원인 등)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예방 및 대처방안 관련 보도자료 증가

###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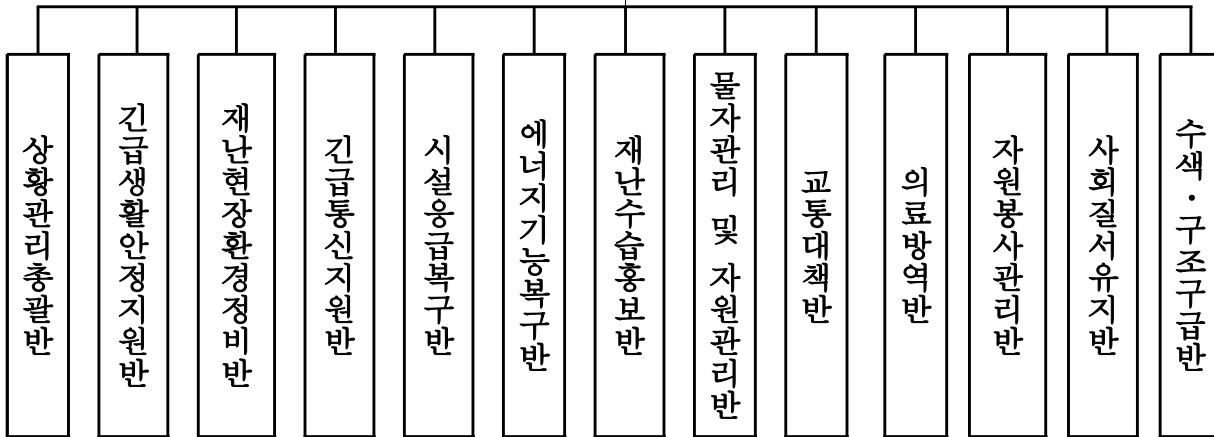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군수</li> <li>• 위원 : 16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li> <li>•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li> <li>• <b>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b></li> <li>• 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li>•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군수</li> <li>• 위원 : 13 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li> <li>•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li> <li>• <b>지역 축제 안전관리 심의</b></li> </ul>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장 : 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li> </ul>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li> <li>•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시장·군수·구청장→사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li> </ul>

[남해군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남해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남 해 군 수	
차 장	
남 해 군 부 군 수	
통 제 관	
안 전 건 설 국 장	
담 당 관	
관 련 재 난 부 서 장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 (재난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주민복지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녹지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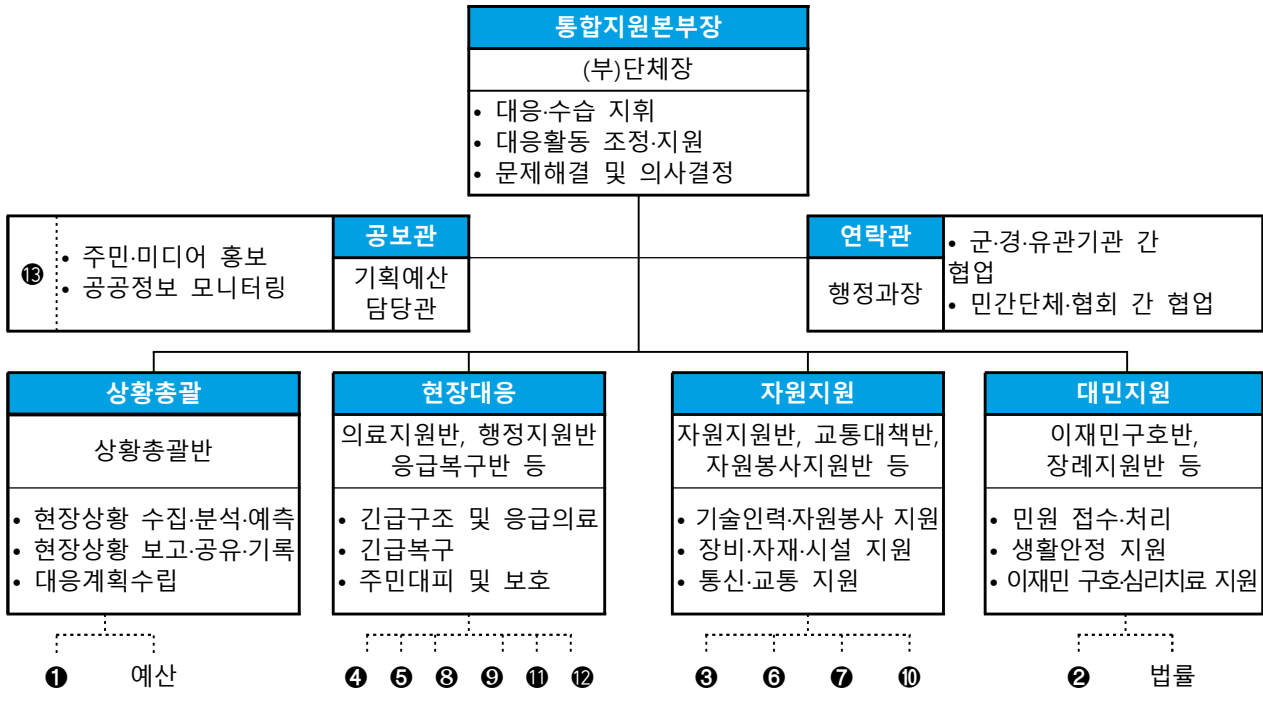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행정과)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소관부서별 지원)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지역활성과)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기획예산담당관)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 정상태 유지 (재난안전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보건소)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주민복지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남해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남해소방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 |             |                     |                 |                               |
|-------------|---------------------|-----------------|-------------------------------|
| ① 재난상황관리    |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 ③ 긴급 통신 지원      |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 ⑦ 교통대책              |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
| ⑪ 사회질서 유지   | ⑫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 ⑬ 재난 수습 홍보      | ⑩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담당부서	전화번호
남해소방서	- 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 긴급구조활동 통합 및 조정	현장대응단	860-9260
남해경찰서	- 도로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대책	생활안전 교통과	860-2346
제8962부대 2대대	- 인명구조 활동 지원(인력, 장비)	남해대대	863-4113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	900-1400
한국전력 남해지사	- 전력설비 복구인력 및 장비 현장지원 - 복구 시행	-	860-2203
KT 사천지점	- 통신시설 복구인력 및 장비 현장지원	남해지사	862-0110
남해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보호 및 복구 - 이재학생 대책(공납금 면제 및 지원 등)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 등 - 방재교육, 학생에 대한 방재교육 지원 및 홍보	행정지원과	860-4160
부산지방기상청	- 기상통보 및 특보 발효	통영기상대 남해기상관측소	645-7137
통영해양경찰서	-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남해파출소	647-2341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 피서객 대피 - 기상상황 홍보 등	한려해상 관리사무소	860-5800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2019.10.04.	안전기획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	사회, 경제적 중대한 재난 발생시 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 지급	2020.06.09.	안전기획
남해군 마을안전지킴이 운영조례	마을안전지킴이 운영 및 재난, 생활안전망 구축	2020.04.14. (2020.12.08.)	안전기획 (일부개정)
남해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각종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2018.02.27. (2019.03.14.)	안전기획 (일부개정)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10.04. (2018.08.17.)	안전기획 (일부개정)
남해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4.12.30. (2019.12.12.)	안전기획 (일부개정)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2017.06.30.	안전기획
남해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8.12.28.	안전기획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물놀이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2013.05.08. (2015.10.02.)	안전기획 (일부개정)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4.12.30. (2018.11.19.)	안전기획 (일부개정)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대한 조례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예경보등에 관한 사항 규정	2005.12.12. (2018.08.16.)	안전기획 (일부개정)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규정	2014.02.28. (2018.11.19.)	안전기획 (전부개정)

# 남 해 군 공 보

2021년 4월 6일

제 688 호 (81)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2019.03.14.	안전기획 (전부개정)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006.03.17. (2018.11.19.)	안전기획 (일부개정)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5.12.29. (2018.08.17.)	방재복구 (일부개정)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1.04.15.	방재복구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2차피해예방 및 지진발생 지역의 위험도 판정 규정	2012.05.04.	방재복구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운영 규칙	남해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19.06.18.	방재복구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08.17.	민방위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의용소방대 지원 및 현장대응 능력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	2018.02.27. (2019.03.14.)	민방위 (일부개정)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남해군 주부민방위 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5.12.04.	민방위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017.11.10. (2020.09.08.)	민방위 (전부개정)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1996.07.24. (2020.09.08.)	하천관리 (일부개정)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송신소	KBS 망운산 송신소	통제실	KBS 순천방송국	1978.1.	철조망 CCTV 설치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 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2020년 계류보전사업 (창선동대지구)	창선면 동대리 산32일원	1km	2020.3.12. ~5.20.	172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계류에 의한 토사의 침식 방지
2020년 계류보전사업 (미조송정지구)	미조면 송정리 산98일원	1km	2020.3.6. ~5.14.	176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계류에 의한 토사의 침식 방지
2020년 사방댐사업 (삼동봉화지구)	삼동면 봉화리 산427 일원	1개소	2020.3.18. ~6.15.	185	산사태나 땅밀림 등으로 인한 토석류 재해 방지
2020년 사방댐사업 (이동다정지구)	이동면 다정리 산176-1일원	1개소	2020.3.11. ~6.8.	198	산사태나 땅밀림 등으로 인한 토석류 재해 방지
2020년 산지사방사업 (창선동대지구)	창선면 동대리 산43-2일원	1ha	2020.3.16. ~5.14.	57	산지의 붕괴, 침식방지 등 산사태예방
2020년 추가 계류보전사업 (남면평산지구)	남면 평산리 산26일원	0.5km	2020.9.28. ~11.16.	73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계류에 의한 토사의 침식 방지
2020년 추가 계류보전사업 (미조미조지구)	미조면 미조리 846일원	0.5km	2020.10.5. ~11.23.	69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계류에 의한 토사의 침식 방지
원예예술촌 (둔촌)하수 처리시설	삼동면 동천리 (동천, 내동천, 화암, 둔촌, 화천, 금천)	동천 하수 처리장 185㎡/일	2017. 1. ~ 2021.12.	10,342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명	위치	사업 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설치		하수관로 4.4km 둔촌 하수 처리장 80㎡/일  하수관로 2.9km			
미FDA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장	남해군 이동, 삼동, 고현, 설천, 창선면	하수처리 시설 8개소 하수관로 45.3km	2018. 1. ~ 2022.12.	45,265	하수처리 시설 설치
회룡·노구곤 유·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남해군 서면 회룡, 정포, 노구, 유포 창선면 곤유, 당항	하수처리 시설 2개소 하수관로 20.5km	2020. 1 ~ 2022.12	19,277	하수처리 시설 설치
2019년 하수처리 시설기술 진단결과 개선시설 공사	창선 외 11개소 등	기계설비 교체 및 개량 12개소 계장제어 장치 개량 5개소	2020. 6. ~ 2021. 2.	316	하수처리시설 효율성 증대
중리소류지 보수보강공사	서면 중리마을	수로 L=28m 사석보강 A=945㎡	20.3.17.~ 20.9.12	170	저수지 유지관리
사포소류지 보수공사	창선면 사포마을	여수토방 수로 13.3m, 사통 7.6m, 차수공사 L=67m	20.10.12.~ 21.4.9	370	저수지 유지관리
상심천저수지 개보수공사 (2지구)	남해읍 내금,섬포마을	저수지 개보수 2개소	20.12.16~ 21.6.13.	762	저수지 유지관리
토촌방조제 개보수사업	남해읍 선소마을	수문권양 기 5ton 교체 4대	20.7.3.~ 20.8.31	17	방조제 유지관리
토촌방조제 배수문정비	남해읍 선소마을	수문권양 기 5ton 교체 4대	20.3.23.~ 20.5.15.	14	방조제 유지관리

사업명	위치	사업 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모천항 시설확충사업	설천면 문항리 일원	선착장 확장 및 송상	2020.3.30. ~2020.10.5	144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고순항 시설확충사업	창선면 율도리 일원	선착장 확장	2020.5.28. ~2020.09.24.	240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정포항 시설확충사업	서면 정포리 일원	선착장 확장, 파도막이 설치	2020.5.18. ~2020.10.23.	175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언포항 시설확충사업	창선면 가인리 일원	선착장 확장	2020.8.6. ~2021.1.2.	242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용소항 시설확충사업	이동면 용소리 일원	방파제 확장	2020.3.27. ~2020.8.24.	187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노루목항 보수보강공사	삼동면 동천리 일원	TTP 설치	2020.2.26. ~2020.5.25.	146	재난재해 예방
장항항 보수보강공사	서면 서상리 일원	TTP 설치	2020.2.24. ~2020.5.23.	139	재난재해 예방
단항3항 보수보강공사	창선면 대벽리 일원	파도막이 설치	2020.2.26. ~2020.5.25.	116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벽련항 보수보강공사	상주면 양아리 일원	TTP 설치	2020.3.3. ~2020.5.31.	112	재난재해 예방
정거소하천 정비	이동면 정거마을	소하천 정비	2016.1.~ 2021.12.	9184	재난재해예방
광천소하천 정비	청선면광천마을	소하천 정비	2016.1.~ 2020.9.(준공완료 )	3380	재난재해예방
덕신소하천 정비	설천면 덕신마을	소하천 정비	2018.1.~ 2022.12.	11,100	재난재해예방
전골들정비	상주면 금양마을	소하천 정비	2019.12.~ 2022.12.	2,058	재난재해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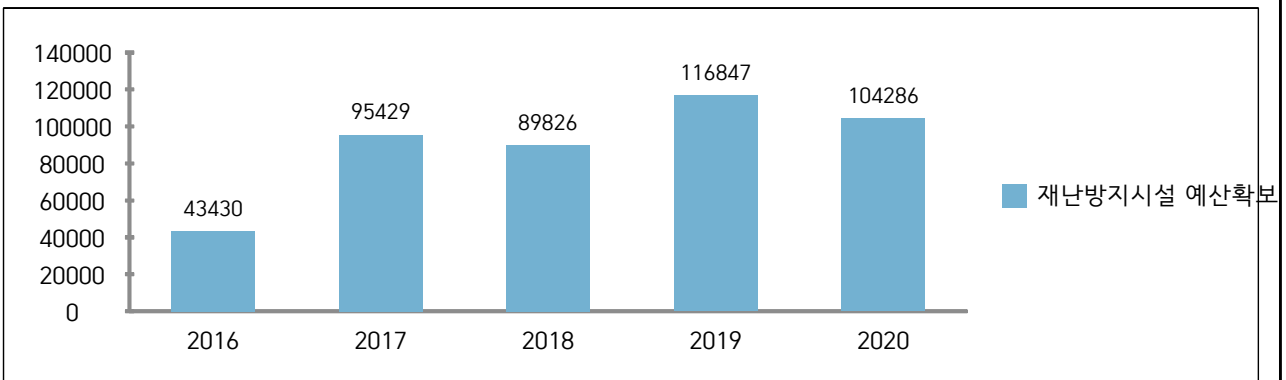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43,430	95,429	89,826	116,847	104,286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일부 재난방재시설 정비 완료로 예산 일부 감소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 · 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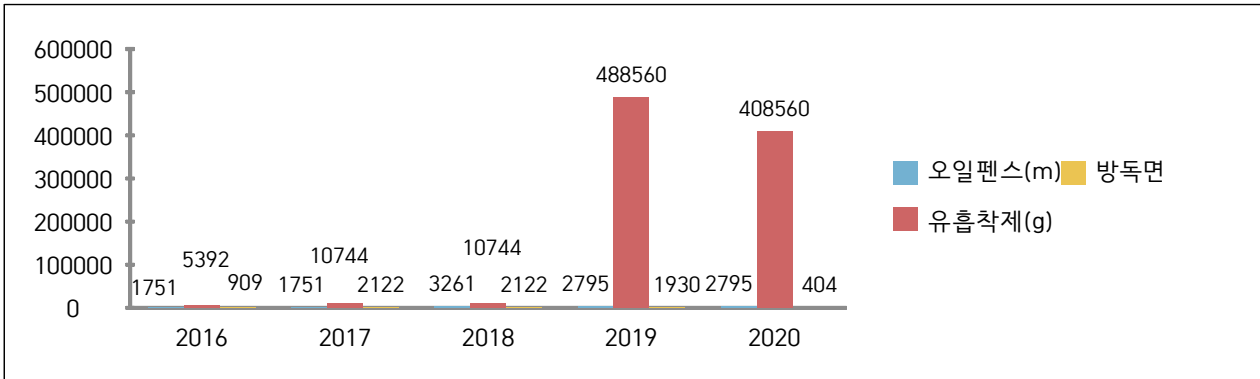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펜스	유흡착제	흡착롤	유처리제
		km	천매	km	kl
총계	491,355	2,795	408,560	80,000	-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오일펜스(m)	1,751	1,751	3,261	2,795	2,795
유흡착제(g)	5,392	10,744	10,744	488,560	408,560
방독면	909	2,122	2,122	1,930	404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재난관리자원 시스템 현행화로 중복집계 제외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11	21	43	3	142	-
병 원	1	10	18	1	142	-
보건소	1	2	21	2	-	-
기 타	9	9	5	-	-	-

[수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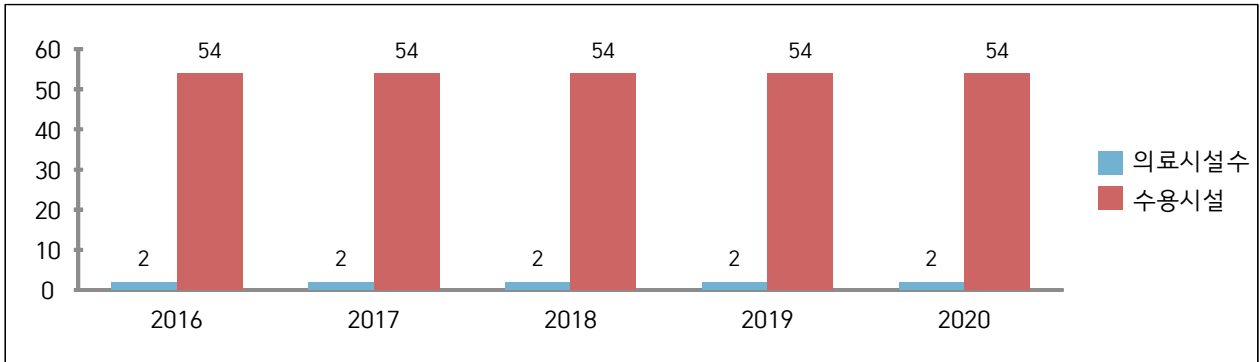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54	21,153	11	14,108	34	2,450	-		9	4,596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시설수	2	2	2	2	2
수용시설	개소	54	54	54	54
	수용인원	21,153	21,153	21,153	21,154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변 동 없 음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방호복	수중펌프	화물트럭	고소작업트럭	굴착기
총계	804	800	1	1	1	1

[복구장비]

구분	계	제설기	살포기	굴삭기	방역차	덤프트럭
총계	13	3	5	1	2	2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갈퀴
총계	1,199	10	507	682

[기타장비]

구분	계	오일스키머	보호복	오일펜스	흡착포	적외선체온계	위성전화기
총계	2,961	1	280	137	2,500	3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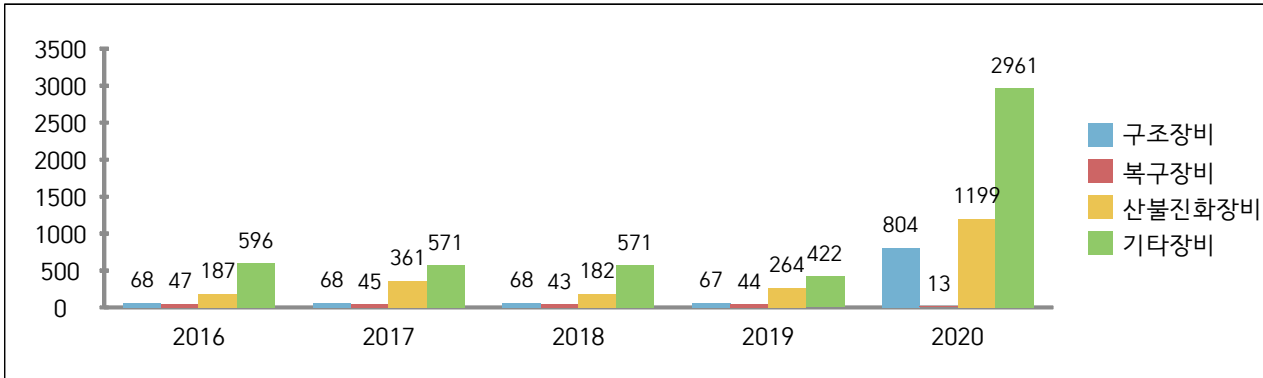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구조장비	68	68	68	67	804
복구장비	47	45	43	44	13
산불진화장비	187	361	182	264	1,199
기타장비	596	571	571	422	2,961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방호복의 구조장비 집계포함 및 갈퀴의 산불진화장비 집계포함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인원	93	46	22	11	8	0	5	1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인원	해 당 없 음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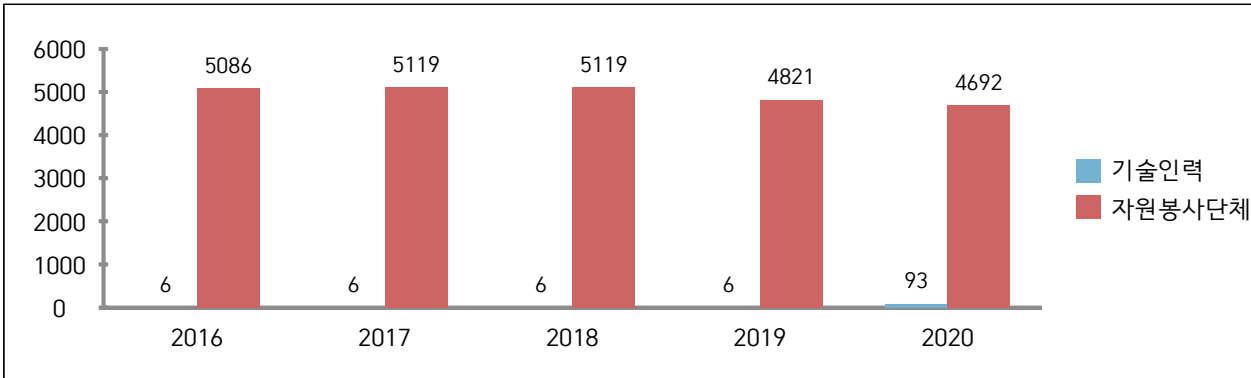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자율 방재단	자율 방법 연합회	적십자 해군 지부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 회	여성 단체 협의회	기타
인원	4,692	470	-	174	231	325	232	32	39	2,225	1,16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술인력	6	6	6	6	93
기능인력	해 당 사 항 없 음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5,086	5,119	5,119	4,821	4,692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기술인력 집계에 직렬별 공무원 인원 포함
- 단체 명단 재정비 및 현행화로 일부 수치 조정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 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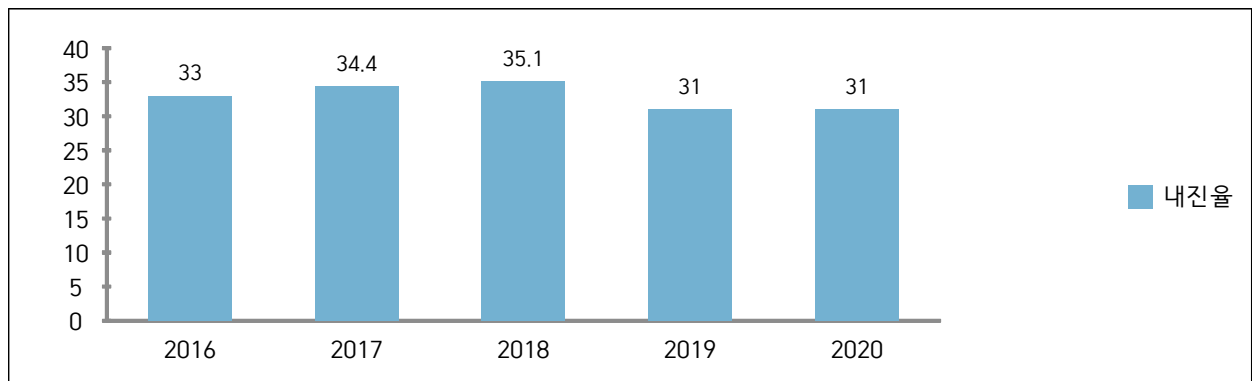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재난관리평가	2020.06.02	행정안전부	보통	
지역안전지수	2020.12.17.	행정안전부	교통사고(3), 화재(4) 범죄(2), 생활안전(3), 자살(3), 감염병(4)	1등급일수록 안전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0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일반건축물	32	16	0	0	50
도로시설물	10	1	0	0	10
수도시설	10	1	0	0	10
폐기물처리	4	0	0	0	0
공공하수	4	0	0	0	0
병원시설	1	1	0	0	10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내진율	33	34.4	35.1	31	31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 원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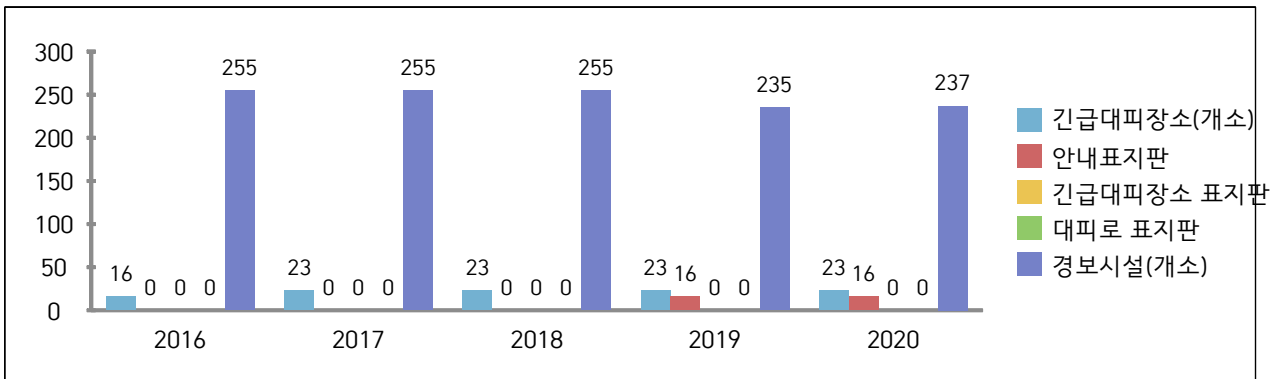
- 전년도 동일

다. 지진(해일)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옥외대피소	16	16	16	-	237개소 (전읍면 및 마을회관)
실내구호소	7	7	7	-	

◆ 지진(해일)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	-	-	2,500	-
지구수(개소)		2종 (옥외,실내)	2종 (옥외,실내)	2종 (옥외,실내)	2종 (옥외,실내)	2종 (옥외,실내)
긴급대피장소(개소)		16	23	23	23	23
표 지 판	안내표지판	-	-	-	16	16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	-	-		
	대피로 표지판	-	-	-		
경보시설(개소)		255	255	255	235	237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증 감 없 음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152백만원	152백만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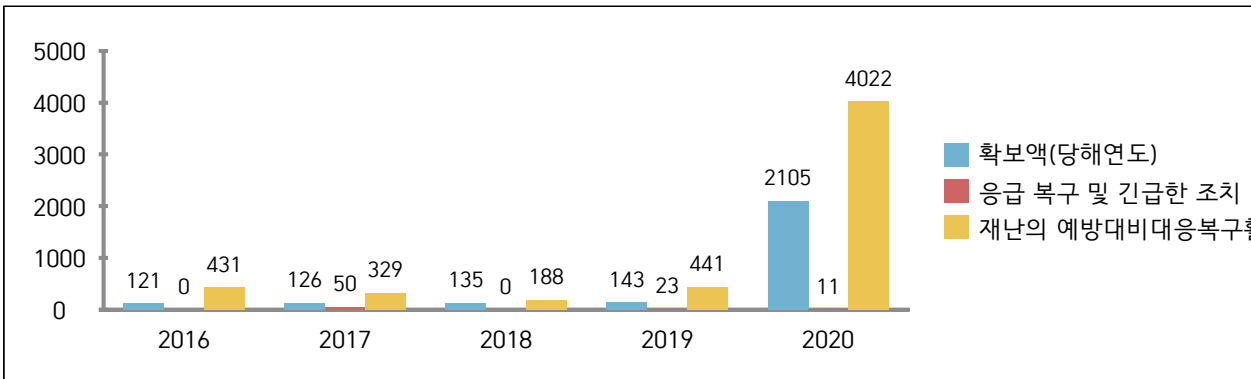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2,163백만원	2,163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확보액 (당해연도)		121	126	135	143	2,105
사 용 액	합 계	431	379	188	464	4,033
	공 공		50		23	11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431	329	188	441	4,022
민 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법정 적립기준액 100% 확보
- 2020년의 경우 총 8개 기금사업 추진으로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여 재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함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신설

- 제방누수가 의심되는 노후된 상수도 수원지의 제방 그라우팅 보수 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원수 생산 및 생활용수공급에 기여
- 하천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구간의 하천을 정비 (L=200m)하여 인근주택 22가구 및 농경지 0.5h의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비, 주요관광지 미스트쿨링용 팬 설치, 살수차 운영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온열질환자를 사전 예방
- 해외입국 및 국내접촉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원스톱 도우미 운영 (5월~6월, 2명 채용)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
-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경상남도 긴급 재난지원금 편성으로 군민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제9호 태풍 ‘마이삭’ 으로 파손된 해안도로를 응급복구하여 군민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를 예방
-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예산 규모가 작은 편이므로 코로나19 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적립액의 증액 필요

◆ 민간분야에 기금을 활용한 사업별 내역(당해 연도에 한함)

사 업 명	해당사항 없음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효과	
예산내역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

#### 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재난안전과	2020	풍수해 재난대응
지진	재난안전과	2020	지진재난 대응
대형화산폭발	재난안전과	2020	대형화산폭발 재난 대응
적조	해양수산과	2020	적조재난 대응
조수	해양수산과	2020	조수재난 대응
가뭄	재난안전과	2020	가뭄재난 대응
산불	환경녹지과	2020	산불재난 대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녹지과	2020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재난 대응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녹지과	2020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 대응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수산과	2020	대규모 해양오염 재난 대응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안전과	2020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 대응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과	2020	해양선박사고 재난 대응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지역활성과	2020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재난 대응
다중밀집 건축물붕괴 대형사고	도시건축과	2020	다중밀집 건축물붕괴 대형사고 대응
가축질병	농축산과	2020	가축질병사고 대응
감염병	보건소	2020	감염병사고 대응
전력	지역활성과	2020	전력사고 대응
보건의료	보건소	2020	보건의료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식용수	상하수도과	2020	식용수사고 대응
육상화물운송	건설교통과	2020	육상화물운송사고 대응
가스	지역활성과	2020	가스사고 대응
저수지붕괴	건설교통과	2020	저수지붕괴사고 대응
문화재	문화관광과	2020	문화재사고 대응
폭염	재난안전과	2020	폭염 대응
산사태	환경녹지과	2020	산사태 대응
한파	재난안전과	2020	한파 대응
초미세먼지	환경녹지과	2020	초미세먼지 대응
위험물 붕괴	재난안전과	2020	위험물 붕괴사고 대응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재난안전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지진	재난안전과 (2020-12-04)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대형화산폭발	재난안전과 (2020-12-07)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적조	해양수산과 (2020-12-09)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조수	해양수산과 (2020-12-09)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가뭄	재난안전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산불	환경녹지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 남 해 군 공 보

(96) 제 688 호

2021년 4월 6일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용	비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녹지과 (2020-12-09)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녹지과 (2020-12-09)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수산과 (2020-12-09)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안전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과 (2020-12-04)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지역활성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다중밀집 건축물붕괴 대형사고	도시건축과 (2020-12-09)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가축질병	농축산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감염병	보건소 (2020-12-10)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전력	지역활성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보건의료	보건소 (2020-12-10)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식용수	상하수도과 (2020-12-09)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육상화물운송	건설교통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가스	지역활성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저수지붕괴	건설교통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문화재	문화관광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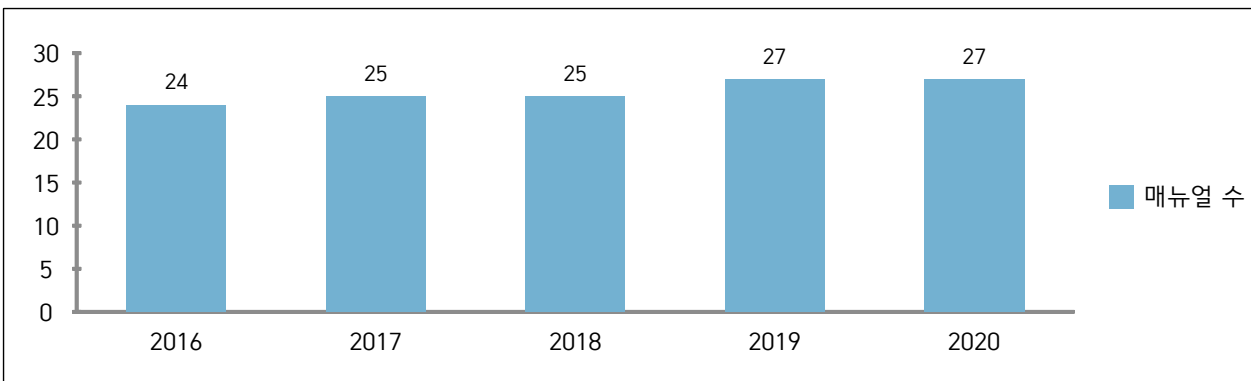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용	비고
폭염	재난안전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산사태	환경녹지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한파	재난안전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초미세먼지	환경녹지과 (2020-12-07)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위험물 붕괴	재난안전과 (2020-12-08)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1.20~11.30		코로나19 사이버 교육 대체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뉴얼 수	24	25	25	2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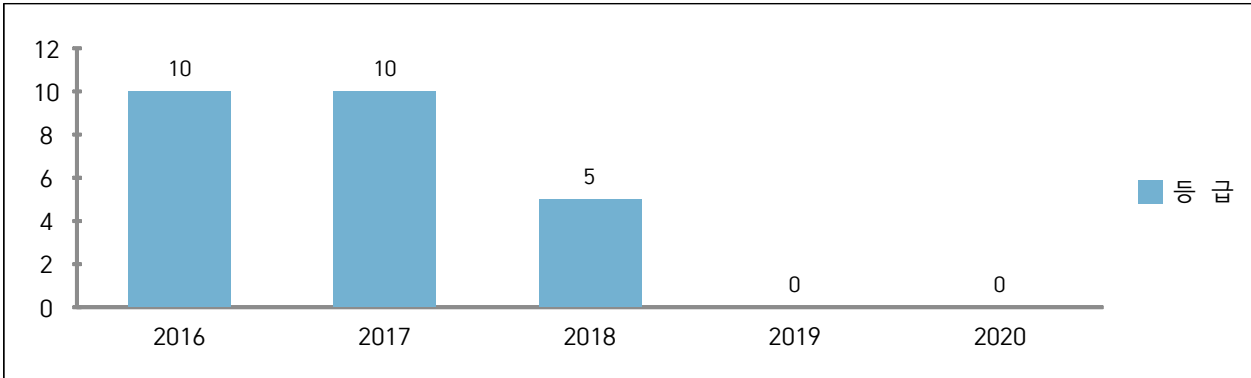
☞ 구체적 내용 설명(증감원인 등)

- 초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매뉴얼 제정으로 증가(2019년)

###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해 당 없 음			



####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등 급	10	10	5	해당없음	D

####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2019년도는 지역안전도 모의진단 추진에 따른 진단결과 없음
- 2020년도는 지역안전도 진단 등급기준이 변경됨

###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 피보험자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보험료 : 남해군 일괄납부
- 보험기간 : 2021. 3. 1. ~ 2022. 2. 28. (1년).
- 보험내용 : 화재, 폭발, 교통사고, 일사병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 보 험 사 : NH 농협 손해보험 (1644-9666)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담당자 : 임정훈 전화 : 055)860-342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486호

##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6일

### 남 해 군 수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남해군 문화관광과(☎055-860-8593)
3.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행 지침 및 참고도면 : <붙임1~2> 참조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독일마을·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남해군 “독일마을·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건축물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민간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 법규나, 조례지침 등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 ③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지침 내용이 관련 법령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제2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3조 (단위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필지 단위를 대지로 건축하여야 한다.

#### 제4조 (토지의 분할 및 합병)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5조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를 허용한다.

※ 단, 영업행위는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 내에서 1동의 건축에 1개 층만 허용한다.

도면 표시	적용 구역	구분	건축법상 지정용도	허용 용도
I-5 및 I-7	독일로 및 주요 도로변 (I-7)	허용 용도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 생활시설(가목) 소매점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 생활시설(나목) 휴게음식점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 생활시설(자목) 일반음식점	1. 단독주택 2. 독일(산) 기념품 및 선물용품점 3. 독일 음식 판매(독일마을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휴게음식점 허용) 4. 독일 음식 판매(독일마을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일반음식점 허용)
	골목길 (I-5)	허용 용도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 생활시설(가목) 소매점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 생활시설(너목) 제조업소	1. 단독주택 2. 독일(산) 기념품 및 선물용품점, 서점 3. 소규모 제조업소 - 독일 관련 공방, 소시지, 소품, 가죽, 나무, 악기, 도자기 등
	독일로 및 주요 도로변 · 골목길	불허 용도	1. 허용용도 외 불허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가목의 소매점 중 “편의점” 나. 나목의 휴게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 접객업 가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되는 것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형태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것 가. 일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나. 중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다. 자목의 일반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영업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 접객업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되는 것	

- ▶ 주민협정 체결
  - 영업행위 준수, 경관 관리 등 주민 스스로 마을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관리·통제 및 운영
- ▶ 남해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 심의
  - 지구단위계획 지침, 건축물 디자인, 주변과의 조화, 정체성 등 심의
- ▶ “독일로 및 주요 도로변(I-7)”은 독일마을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소로2-1호선(독일로), 소로3-1호선(예술길, 독일로-원예예술촌 입구)]에 연결한 필지를 말함.
- ▶ 본 지침 시행(고시일) 이후, 토지소유권 이전 등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단위대지가 변경될 경우, 상기 기준(독일로 및 주요 도로변(I-7)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연결한 필지를 말함)에 부적합한 필지는 종전 가구번호인 I-5에서의 건축물 허용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 용도정의〉

허용/불허용	정 의
일반음식점	· 독일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기념품 및 선물용품점	· 독일(산) 공예품, 소품, 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서점	· 독일 관련 아트서적, 패션매거진, 사진집 등 독일문화를 느낄 수 있고 콘텐츠가 있는 서점을 말함
공방	· 독일이 연상되는 콘텐츠를 소재로 운영되는 예술 공방을 말함
소규모 제조업소	· 독일이 연상되는 콘텐츠를 소재로 독일문화 체험 및 소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독일식 소시지, 빵, 가죽, 나무, 악기, 맥주, 전통의상, 도자기 등)
편의점	· 편리함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소형소매점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24시간을 운영하는 소형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예 : 세븐일레븐, CU편의점, GS25,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등)
프랜차이즈 커피숍	· 커피를 주 메뉴로 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국내외 프랜차이즈 커피숍 (예 : 엔젤리너스, 자바데이브, 스타벅스, 탐앤탐스, 카페베네, 베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제과점	· 과자, 빵을 주 메뉴로 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국내외 프랜차이즈 제과점 (예 :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롤링핀, 고려당, 비엔씨, 신라명과 등)
일식, 중식 등 음식점	· 판매되는 주메뉴가 한국이 아닌 외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음식점 (예 : 회 및 초밥, 중화요리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국내외 프랜차이즈 음식점(가맹점) (예 : 국수나무, 맘스터치, 박가부대, 김밥천국, 빕스, 의령소바, 등)

# 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6조 (건축물 규모)

위 치	구 분	적용사항
독일마을 주요 도로변 및 골목길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15m 이하)
	형 태	· 독일의 전통적인 양식으로 건축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경사각 5/10 이상으로 설치 · 지붕재료는 적색계통의 기와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
	색 채	· 원색지양

제5장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7조 (건축물의 방향성)

건축물 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서는 벽면의 방향이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제8조 (건축물의 형태)

적 용 사 항
<p>▶ 적용구역 및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li> <li>-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대수선·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li> </ul>
<p>▶ 주택 형태 및 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은 독일의 전통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i> </ul>
<p>▶ 구조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식 구조 또는 목구조로 하여야 한다.</li> <li>- 주택의 구조는 국내 건축법에 따른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 독일주택과 어울리지 않는 한옥, 통나무주택 및 강구조 주택은 불허한다.</li> <li>- 발코니는 확장하여 구조 변경하지 않고, 난간만 설치하여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li> <li>-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수 없으며, 각 층 외벽의 창호 가로길이의 합계는 각 층 외벽 둘레길이의 1/3을 넘을 수 없다.</li> <li>- 건축물의 외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할 경우 남해군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li> <li>-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지붕의 구배는 5/1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ul>
<p>▶ 색채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 마감재로 사이딩, 목재, 인조 또는 천연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백색 또는 미색계통의 플라스터(Putz)를 사용한다.</li> <li>- 지붕의 재료는 적색계통의 기와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검정, 청색 등 기타 색상 기와 사용 불가)</li> </ul>
<p>▶ 창호 및 출입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는 목재(Holz) 또는 PVC(Kunststoff) 칼라알루미늄을 사용 하여야 하며, 백색 또는 천연목재의 색상을 선택하여야 한다.</li> <li>- 폴딩도어의 설치 불허한다.</li> <li>- 근린생활시설 1개소 당 출입구는 1개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비상구는 출입구에서 제외한다.)</li> </ul>

제9조 (건축물이 아닌 부속시설)

적 용 사 항

- ▶ 광고물(간판 등) 및 색채
  - 간판 글자는 독일어로 표시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 설비기기의 설치
  - 건축물의 개별 냉·난방 등을 위해 실외기 설치를 지붕 또는 도로에 접하거나 가시 되는 벽면에 설치할 수 없다.
- ▶ 태양광 설치
  -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는 불허한다.

제6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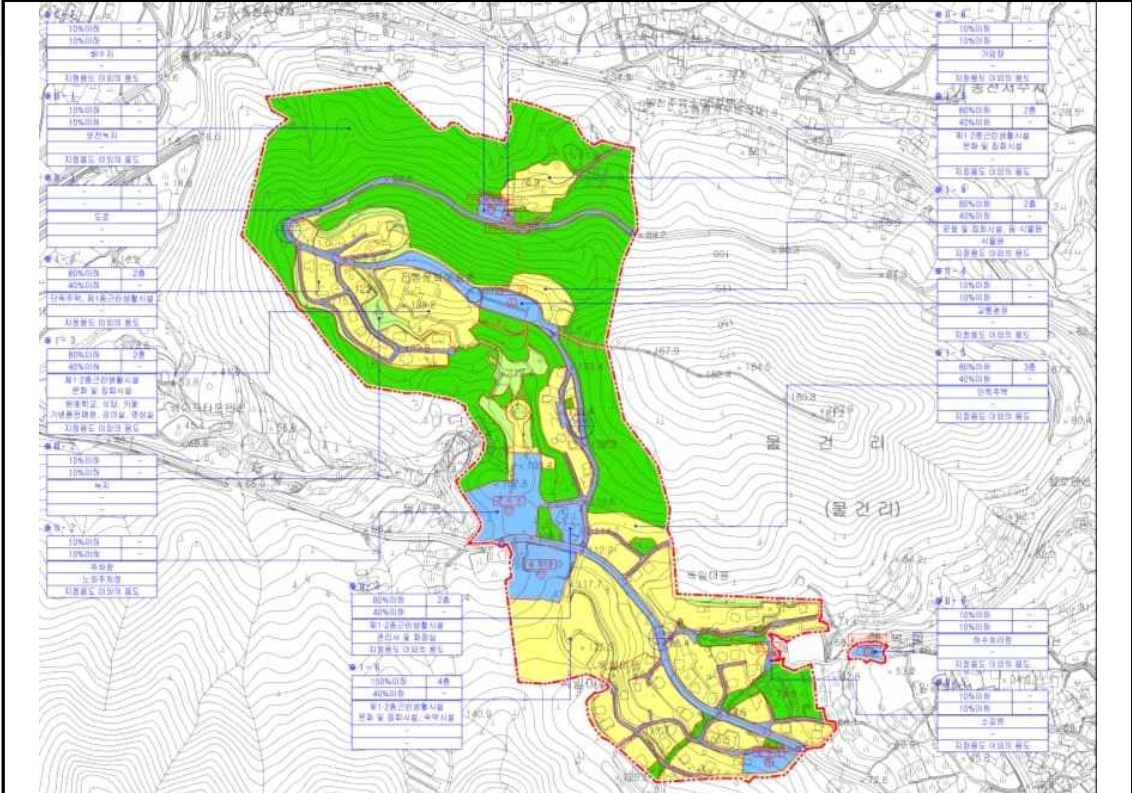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침을 준수하여 면밀한 여건 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상세 도서를 작성한 후 집행한다.
- ②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축물의 소유주 및 임차인에게 해당된다.
- ③ 남해군에서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독일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 준수 여부 및 남해군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의 수정 요청 시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이 지침 시행 이후의 건축협의(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 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란에 명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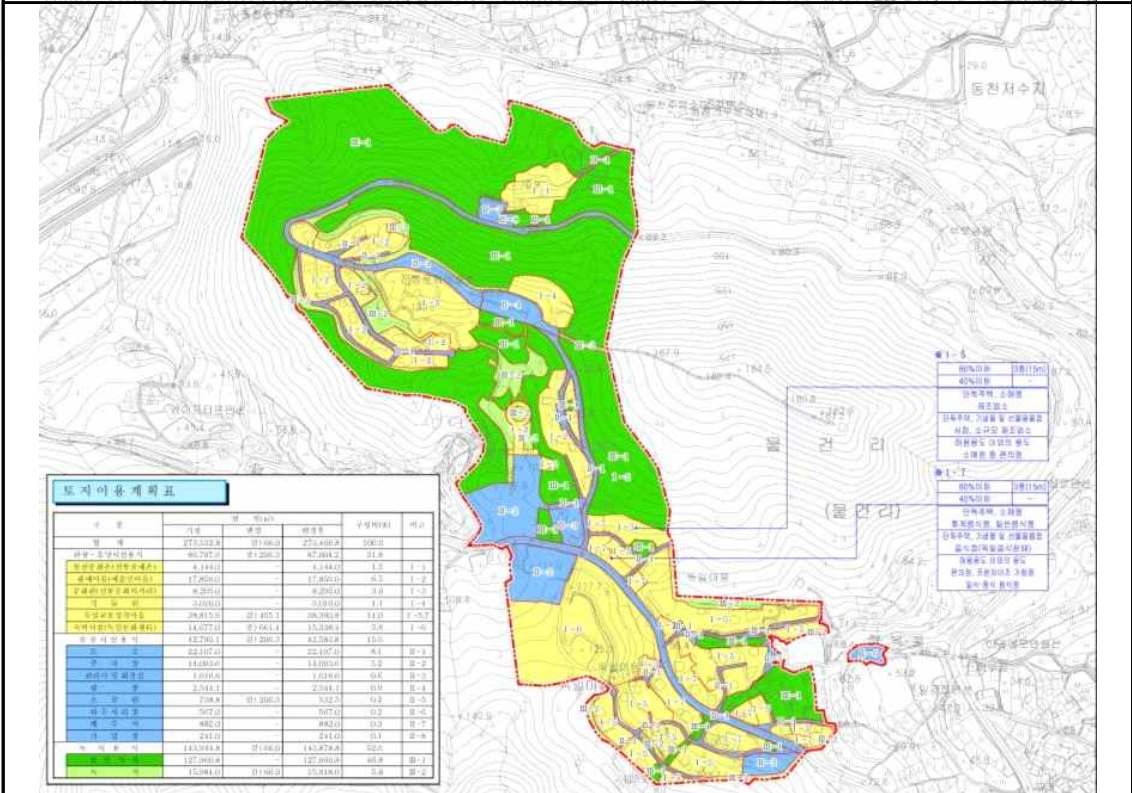
<붙임2>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도면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참고용)

기정 ▶



변경 ▶



남해군 공고 제2021 - 487호

## 군관리계획(교통시설:창선단항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20-144호(2020.8.19.)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창선단항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단항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6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16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관리계획(교통시설:창선단항주차장) 조성사업
- 명칭 :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21,4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8. 열람장소 및 기간

-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본번	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4,446	21,419						
1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168	1	답	846	846	남해군					
2	"	168	2	답	575	575	남해군					
3	"	167	2	답	542	542	남해군					
4	"	167	1	답	2,000	2,000	남해군					
5	"	139		답	1,379	1,379	남해군					
6	"	141	1	답	228	228	남해군					
7	"	141	2	전	774	774	남해군					
8	"	166		답	764	764	남해군					
9	"	167	3	답	116	116	남해군					
10	"	152		임	2,357	2,357	남해군					
11	"	153		전	397	397	남해군					
12	"	160		답	73	73	남해군					
13	"	154		답	1,048	1,048	남해군					
14	"	155		답	555	555	남해군					
15	"	156		전	1,025	1,025	남해군					
16	"	158		답	1,150	1,150	남해군					
17	"	159		답	278	278	남해군					
18	"	161		답	340	340	남해군					
19	"	8		답	499	499	남해군					
20	"	8	1	답	841	841	남해군					
21	"	7		답	294	294	남해군					
22	"	6	7	답	162	162	남해군					
23	"	162		답	732	732	남해군					
24	"	6	41	도	2,025	837	남해군					
25	"	산 9	6	도	1,928	89	남해군					
26	"	163		답	270	270	남해군					
27	"	164	2	답	194	194	남해군					
28	"	164	1	답	681	681	남해군					
29	"	165		답	1,379	1,379	남해군					
30	"	산 9	29	임	571	571	남해군					
31	"	168	3	임	423	423	남해군					